

2022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**라급 공무원<치매전문요원:간호사>**,
마급 공무원<치매전문요원:작업치료사>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
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.

2021. 12. 29.

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위원장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예정 분 야	채용직급	채용기간	채용인원	담 당 업 무
치매전문요원 (간호사)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“라” 급	임용약정일로부터 1년 (주 35시간)	1명	○치매검진사업(간호사) - 치매 선별,진단검사 - 치매진료지원 ○코로나19등 감염병 지원업무(공통)
치매전문요원 (작업치료사)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“마” 급	임용약정일로부터 1년 (주 35시간)	1명	○치매지원사업(작업치료사) -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○코로나19등 감염병 지원업무(공통)

- ※ 1. 채용기간은 업무성과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2.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2조에 따라 임용약정 해지 가능
3.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,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의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

2. 근거법령

- 『지방공무원법』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『지방공무원임용령』 제3조의2(임기제공무원의 종류)
- 『지방공무원임용령』 제21조3(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『지방공무원보수규정』 제34조(연봉 및 연봉한계액) 별표 13, 제35조(신규임용 시 연봉책정)

3. 응시자격 기준

가. 공통사항 (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하지 않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(면접시험일 기준)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- 마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
 - 바. 안전 감독 업무, 인·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
 - 사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학교. 다만,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.
 -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-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-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- ④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○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

○ 성별 제한은 없으나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
○ 지역 제한 없음

나. 자격기준(공고일 현재 기준)

- 아래의 자격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자
 - 간호사 : 의료법 제2조 및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자로서
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작업치료사 :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작업치료사 면허증을 소지자로서
관련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* 직무(경력)관련 분야 인정범위

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, 보건·의료기관에서 간호사, 작업치료사로 근무한 경력

*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의 근무경력은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자부 예규 제38호, 2018. 7. 12)」에 의한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 ⇒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

4. 선발방법(서류전형 → 면접시험)
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·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
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, 자질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다. 기타사항

-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10일간 재공고함
-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
 - ※ 1차 공고 시기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같음함
- 동점자 처리
 -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: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
 -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

5. 시험일정

모집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발표
2021.12.29.(수) ~2022.01.10.(월)	2022.01.06.(목) ~01.10.(월)	2022.01.18.(화)	2022.1월 중	2022.1월 말

※ 채용공고는 서구청 홈페이지(seo.incheon.kr) 채용소식란에 공고

※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공고예정

※ 상기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
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

나. 접수기간 : 2022. 01. 06.(목) ~ 2022. 01. 10.(월)

다. 응시원서 접수처 : 서구청 총무과[인사팀]

라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) 또는 등기우편 접수

○ 우편 접수 시

- 주소 : (22726)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

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

-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

- 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 상당) 동봉

- 응시표 이메일 송부 예정 ⇨ 응시원서 이메일 주소 기재

- 응시표는 면접시험 참석 시 출력하여 지참

-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인사담당자(☎032-560-4104)를 통해 접수 확인을 위한 전화 요망

7. 보수 및 복무조건

가. 보수

- 연봉 : 『지방공무원보수규정』 및 『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에 따라 지급

구 분	연 봉 액	비 고
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“라”급 (8급 상당)	34,319천원	39,222천원 × 35/40시간
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‘마’급 (9급 상당)	21,181천원	48,415천원(9급 상당 상한액) × 50% × 35/40시간

- 연봉 외 급여(수당) :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
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나. 복무조건

구 분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“라”급, “마”급
근무기간	임용약정일로부터 1년 *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가능
소 속	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치매정신돌봄과
근무처	치매정신돌봄과
근무시간	주 35시간
복무기준	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 및 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복무 조례」 준용하되,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(토·일·공휴일, 야간근무 등)은 부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
약정해지	업무태만, 근무수행능력 부족, 임용결격사유 발생시

8.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 1부 <서식1>

- 응시수수료 : 라급, 마급 5,000원

- 방문접수 : 인천 서구 수입증지 날인(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 판매)
- 등기우편 접수 :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

나. 이력서 1부 <서식2>

- A4용지 소정양식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, 상단에 연락처 기재
-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기재할 수 없음.

다.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<서식3,서식4>

- A4용지 1~2매 내외, 경력 중심으로 작성

라. 서류전형 제출서류 양식 1부 . <서식 5>

마. 경력증명서 1부.

- ※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- ※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
- ※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- ※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(공증 필) 첨부
- ※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(근무기간, 직위(급), 담당업무기재)
- ※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,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(날인) 받아 제출
- ※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- ※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, 미제출 시 불인정
- ※ 재직기간, 인사이동사항, 직위·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만 인정됨. 기재되지 않거나 서류 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미비로 조치됨

*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음

☞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자치부 예규 제152호, 2021. 2. 16.)

1.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
 -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3년간 전임 근무 : 3년 인정
2.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
 -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: 2년 인정
3.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(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/2 이상 포함)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인정
 - 외부 전문가 위촉 시에는 응시자와 출신학교,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

바.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.

사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(경력확인용)

※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
※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‘보험가입 전체기간’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

※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

아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<서식6>

자.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<서식7> 또는

주민등록 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, 현주소, 공고일 이후 발급분)

차.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.<서식8>

카. 고용보험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 1부 <서식9>

다.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.

※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※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
-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하며(수료증 및 위촉장 제외),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이어야 함.
-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9. 기타사항

-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서류,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각종 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이 가능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 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 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제출서류(이력서, 자기소개서,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)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 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○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채용절차 관련문의 : 총무과 인사팀(☎032-560-4104)

○ 담당직무 관련문의 : 치매정신돌봄과 치매검진팀(☎ 032-718-0662)

치매지원팀(☎ 032-718-0642)